# 정보화 업무관리 규정

## 제 1 장 총 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의 경영정보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기술 을 이용한 효율적 업무 기반 및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정보화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"정보"란 공사가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 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, 문자, 음성,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 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.
  - ②"정보화"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업무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.
  - ③"정보시스템"이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의 수집, 축적, 전달, 가공, 출력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및 통신망 등을 포괄하여 말한다.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
  - ④ "정보시스템 개발"이란 정보시스템의 구입, 임차 및 신규 개발 등 시스템 도입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.(이하 "시스템 개발"이라

한다)

- ⑤"정보기술부서"라 함은 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, 정보 시스템 기획, 구축, 운영, 관리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⑥"업무 소관부서"라 함은 정보화를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직제 규정상의 분장업무를 갖는 각 부서를 말한다.(이하 "소관부서"라 한다) ⑦"정보기술요원"이라 함은 정보기술부서에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, 편의상 관리자, 업무분석자, 프로그래머, 기계조작요원, 전산행정요원 등으로 그 직무를 구분한다.

### 제 2 장 정보화 계획

- 제4조(정보화 전략계획의 수립) 정보기술부서는 정보화 경영목표와 방침을 달성하고 공사의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한다.
  - 1. 정보화 목표 : 공사 경영전략과 연계한 정보화 목표와 기본 방침설정
  - 2. 중장기 계획 : 중장기 환경예측에 의한 년도별 정보화 추진계획
  - 3. 연간 계획 : 중장기 계획에 의한 연간 세부 시행 계획
- 제5조(중장기계획의 수립) 중장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.
  - 1. 정보시스템의 통합관리 체제 구축 관련 사항

- 2. 정보 인프라 아키텍처 구축 관련 사항
- 3. 정보서비스 사업 추진 관련사항
- 4. 기타 정보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
- 제6조(연간계획의 수립) 정보화 전략계획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계획을 수립 시행한다.
  - 1. 신규업무 개발계획
  - 2. 기 개발업무의 운영계획
  - 3. 정보 인프라 아키텍처의 구성 및 도입계획
  - 4. 정보기술요원의 수급 및 훈련계획
  - 5. 소요예산 추계 및 기타 필요한 사항
- 제7조(정보화 전략계획 수정) 정보화 전략계획은 필요할 경우 추진현황 및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수정, 보완하거나 재수립 할 수 있다.
- 제8조(정보화 추진시의 유의사항) 정보기술부서 및 소관부서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  - 1. 정보화 목적과 추진 방침의 명확화
  - 2. 운용가능성의 충분한 검토
  - 3. 업무의 단순한 전산화보다 경영관리 측면에서의 업무개선에 중점 부여
  - 4. 예산범위 및 경비절감, 업무 효율화 효과
- 제9조(정보화 협의) 정보화에 관련된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자 하는 소관부서는 업무내용 및 정보화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에 정보기술

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### 제 3 장 정보시스템 개발

- 제10조(정보화 대상업무) 정보화 대상업무는 경제성, 능률성, 신속성, 정확성 및 경영효율성을 고려하여 정보화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그 대상으로 한다.
  - 1. 계산, 기록, 분류, 통계 등의 단순 작업의 업무
  - 2. 수작업으로 처리하기에는 비능률, 비경제적인 업무
  - 3. 기술 및 경영효율 기여 업무
  - 4. 경영정책 수립자료 지원 업무
  - 5. 기타 정보화 처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무
- 제11조(시스템개발 의뢰)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발코 자 하는 소관부서는 현행 업무를 조사 분석하고 시스템 개발에 대 한 타당성 판단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보기술부서에 의뢰해야 한다.
  - 1. 정보시스템 명칭
  - 2. 현행 업무 처리 개요
  - 3. 시스템 개발 시 기대 효과
  - 4. 시스템 개발 관련 요청사항
  - 5. 시스템 개발 관련 기본품의서

6. 기타 참고사항

있다.

- 제12조(시스템개발 추진) ①정보기술부서는 소관부서의 정보화 의뢰 내용을 검토하여 개발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정보화 전략계획에 반영하고 개발 시기를 결정하여 업무를 추진한다.
  - ②정보시스템의 개발은 정보기술부서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③정보기술부서는 정보시스템 개발 구축내용, 예산, 일정 등을 검토하여 자체개발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시스템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. ④정보기술부서는 의뢰받은 시스템 개발 의뢰 내용에 대해 개발 완료 시 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한다. 다만 개발 시에는 소관부서의 담당직원을 참여토록 할 수 있으며, 개발 후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
- 제13조(보안성 검토 및 보안관리) ①정보기술부서는 정보시스템을 신·증설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적합성 검토를 의뢰할 수있다.
  - ②정보기술부서는 정보화 사업 발주, 관리,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, 계약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③정보기술부서는 개인정보를 수집·처리·활용하여 시스템의 구축 또는 운영, 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·도난·누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- ④정보기술부서는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 또는 변경(이하 "소프트웨어 개발보안"이라 한다)하여야 하고,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약사업자가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14조(개발전담반의 편성)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내 정보기술요원, 소관부서의 직원, 기타 관련부서 직원으로 개발 전담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- 제15조(시스템 개발절차) 시스템 개발은 다음 각 단계를 거쳐 실시한다.
  - 1. 현행업무 분석 및 요구사항 분석
  - 2. 시스템 설계
  - 3.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
  - 4. 시험적용 및 병행처리
  - 5. 운영

## 제 4 장 정보시스템 운용

- 제16조(운용지침서) 정보기술부서는 시스템 개발이 완료되면 이에 따른 시스템 운용지침서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.
- 제17조(운용관리자의 지정) 정보기술부서는 효율적인 시스템 운용관리를 위하여 운용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.

- 제18조(정보시스템 활용의 기록유지) 정보기술부서는 정보시스템의 가동 및 장애현황에 대한 처리 사항을 장애관리 시스템에 등록 및 유지 관리해야한다.
- 제19조(시스템의 수정) ①업무내용, 제도, 절차, 적용방식의 변경으로 시스템 수정이 요구될 경우에는 정보기술부서에 시스템 수정 의뢰 를 하여야 하며, 정보기술부서는 의뢰내용을 검토한 후 수정 조치한 다.
  -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기술부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정보 시스템 운용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 다.
  - ③시스템 수정 업무처리는 정보시스템 개발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.
  - ④정보기술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수정요청 및 처리내용을 고객요청 관리 시스템을 통해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.
- 제20조(유지보수) 정보기술부서는 정보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예방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문제 발생 시는 신속히 복구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정보기술부서는 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 여야 한다.
  - 1. 책임 및 권한의 지정
  - 2.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문제에 대한 복구 조치
  - 3. 유지보수 요청에 대한 접수 및 처리
  - 4. 정보의 백업 관리

#### 5.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결과 기록 유지

## 제 5 장 정보보안 및 안전조치

- 제21조(정보보안 및 비상조치) ①정보기술부서는 정보보호를 위해 외부로부터의 정보 접근에 대한 통제를 담당할 분임정보보안담당자를 "정보보안지침"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.
  - ②정보기술부서는 천재지변, 예기치 않은 사고 또는 돌발 상황의 발생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  - ③정보기술부서는 사고나 비상사태가 발생한 후에 사고 및 비상조 치 결과를 기록하고 유지하여야 한다.
  - ④정보보안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은 "보안업무관리규정" 및 "정보보 안지침"에 규정된 바에 따른다.
  - ⑤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"개인정보보호지침"에 규정된 바를 따른다.
- 제22조(조작 및 출입의 제한) 정보기술부서는 기기의 조작 및 주전산 기기 설치지역의 출입에 대해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자와 개인코드, 악호를 부여 받은 자를 지정하여 허용해야 한다.
- 제23조(파일의 관리) ①파일은 일반문서와 별도로 보관하여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.

- ②정보기술부서는 주요 파일의 예비(Back-Up)파일을 작성하여 보 관하여야 한다.
- 제24조(기밀유지) 정보기술요원 및 소관부서의 정보시스템 이용자들은 정보화업무 수행 중 취득한 기밀이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 제 6 장 기 타

제25조(코드관리) 정보기술부서는 시스템 구현 시 사용되는 필수 코드에 대한 체계 정립 및 관리를 담당하며, 업무 운영과 관련된 코드는업무 주관 소관부서 담당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